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782번
----------	-------

2020년 9월 3일
문화체육관광위원회

1. 심사경과

- 가.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 나. 제출일자 : 2020년 8월 12일
- 다. 회부일자 : 2020년 8월 21일
- 라. 상정결과 : 제296회 서울특별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체육관광위원회 (2020년 9월 3일, 상정·원안가결)

2. 제안설명의 요지(문화본부장 유연식)

(1) 제안이유

- 가.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 나. 이에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사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 1) 사 무 명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 3) 필요성 :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디자인 문화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
- 4) 사무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나. 서울디자인재단 기관 개요

- 1) 소 재 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 2) 규 모 : 대지 3,191 m^2 , 건물 5,937 m^2 (9층 건물)
-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사전절차

- 지방재정법

-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수석전문위원 김경욱)

가. 동의안 개요

- 본 동의안은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의거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여부에 대하여 미리 서울특별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제출되었음.

나. 출연의 필요성

- 디자인재단은 DDP 시설을 기반으로 서울의 디자인 진흥 및 디자인 문화 확산에 필요한 각종 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함으로써 시민 삶의 질을 높이고 서울의 디자인 경쟁력을 국제적 수준으로 향상하기 위해 설립·운영되고 있으며 디자인 문화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을 위하여 출연이 필요함.

<최근 3년간 출연금 편성 현황>

(단위: 천원)

세입과목	2019년	2020년	2021년(안)
세입예산	64,538,002	68,694,889	52,286,600
자체사업수익	16,807,932	16,791,755	13,954,600
출연금수익	36,928,950	34,340,000	30,991,000
위탁사업수입	-	7,885,778	7,000,000
기부금 등 기타수입	88,600	280,840	341,000
전기이월금	10,712,520	9,396,516	-

다. 출연규모의 적정성

- 2021년도 디자인재단 출연금은 309억 9,100만원으로 2020년 대비 10%인 33억 4,900만원이 감액되었음.

(단위 : 천원)

구분	2020년		2021예산(안) (B)	증감 (B-A)	(B-A)*100/A
	본예산	최종예산 (A)			
출연금	34,340,000	34,340,000	30,991,000	△3,349,000	△10%

<2021년 신규사업 및 증감사업>

(단위: 천원)

구분	정책	단위사업	2020년	2021년	증감	비고
출연금 합 계			34,340,000	30,991,000	△3,349,000	
1.	디자인		21,754,000	30,991,000	9,237,000	
		1. 디자인공공성	2,175,000	3,200,000	1,025,000	
		1. 시민밀착형서비스디자인	600,000	1,100,000	500,000	[신규] 감염예방디자인사업(5억)
		2. 시민대상디자인가치확산	1,575,000	2,100,000	525,000	[신규] 서울디자인온라인플랫폼(5억)
		2. 디자인문화확산	5,247,204	6,600,000	1,352,796	
		1. 디자인문화콘텐츠확대	5,247,204	4,300,000	△947,204	[증감] 유구전시장 구축사업 종료(△10억)
		2. DDP상생기반강화	-	2,300,000	2,300,000	[신규] DDP 살림터 직영운영에 따른 동대문상생 및 디자이너, 시민참여 프로그램 운영(23억)
		3. 디자인산업경쟁력강화	3,906,000	5,700,000	1,794,000	
		1. 디자인인재발굴및취창업	1,850,000	1,700,000	△150,000	[증감] 디자인취업페어(△13.7억/의원발의사업), 서울디자인창업센터 개관에 따른 연간 운영비 산정(11억)
		2. 우수디자인상품개발	1,040,000	2,000,000	960,000	[증감] 디자인기업 및 디자이너 육성사업 활성화(9.6억)
		3. 국내외디자인판로개척지원	1,016,000	2,000,000	984,000	[증감] DDP디자인스토어 리뉴얼 오픈에 따른 운영 활성화(8억)
		4. 혁신경영시스템	1,100,000	2,341,000	1,241,000	
		1. 지속경영인프라구축	1,100,000	2,341,000	1,241,000	[증감] 포스트코로나 경영시스템 효율화(6.2억), 재단 정보인프라 통합운영(7.8억)
		5. 일반관리비	9,325,796	13,150,000	3,824,204	
		1. 디자인사업일반관리비	9,325,796	10,450,000	1,124,204	정규직 106명, 계약직 10명 운영
		2. DDP일반관리비	-	2,700,000	2,700,000	DDP운영본부 정규직 34명 운영
2.	패션봉제사업		12,586,000	0	△12,586,000	패션봉제사업 종료

<연도별 예비비 편성현황>

연도	2019년	2020년	2021년(안)
금액	587,383천원	2,369,532천원 (연말 전액 사용으로 0원 예상)	321,100천원

○ 주요 증액 사유는 디자인산업 육성, 진흥, 인식 확산 등을 위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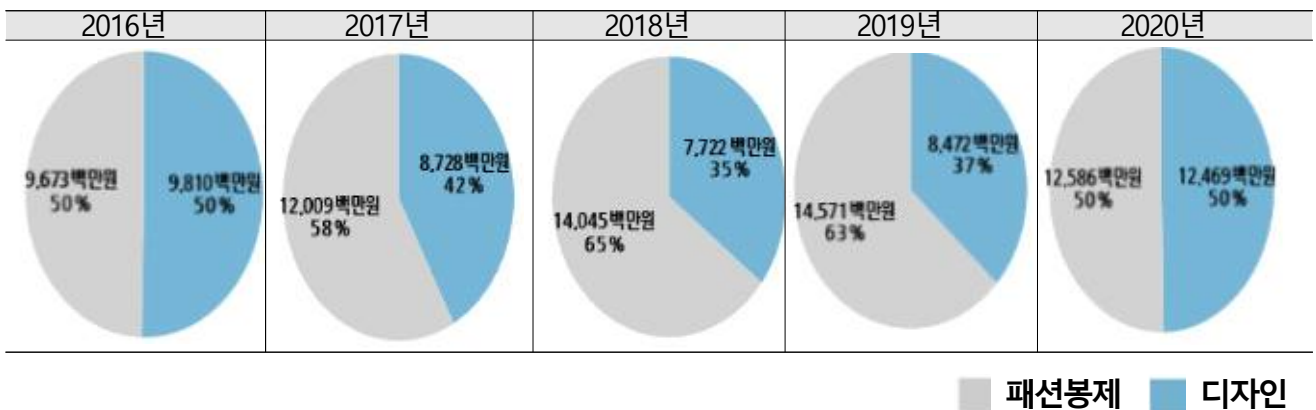
신규 사업(33억)과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인한 '20년 예비비, 이월금 전액 사용에 따른 사업비의 부족분 및 증액 사업(59억)임.

<2020년 예비비 사용내역>

구 분	전기이월금	편성내용		예비비 사용내역
		편성	예비비/ 기본재산편입	
2020년	9,396,516	7,026,984	2,369,532	※ 코로나19 휴관(2.24일자)에 따른 DDP 세입부족분 자체충당으로 예비비 전액 사용 - DDP상반기 세입부족분 충당 (1,034,240천원) - DDP 하반기 세입부족분 충당 예정 (1,335,292천원)

- 주요 감액 사유는 패션봉제사업 이관(도시제조업거점반)에 따른 감액(126억)인데 디자인재단 사업 중 패션봉제 사업의 비중은 전체 사업의 50%이상을 차지하여 왔으며, 특히 패션위크는 DDP 대표 콘텐츠로서 '14년 개관 이후 세계적인 패션쇼로 성장하였으며, DDP 시민대표콘텐츠로 자리매김하여 왔음.

<디자인 사업 대비 패션봉제사업 사업 비중>



■ 패션봉제 ■ 디자인

- 디자인재단 출연금 예산 중 패션봉제사업의 비중이 2016년 이후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였으나 사업의 주요 컨트롤은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패션정책팀)에서 진행하여 그동안 예산편성과 사업수행의 불일치가 지적되어 왔음.

	구분	업무주관	예산교부
출연금	디자인사업, 일반관리비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과 일괄 교부
	패션봉제사업	도시제조업거점반(패션정책팀)	

- 패션봉제사업 이관에 따라 디자인재단 출연금 및 조직관련 변화에 따른 신속하고 철저한 대안마련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없음.

6. 소위원회 심사보고 요지 : 구성하지 않았음.

7. 심사결과 : 원안가결(출석위원 전원 찬성)

8. 소수의견 요지 : 없음.

9.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서울특별시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동의안

의안 번호	1782
----------	------

제출년월일 : 2020년 8월 12일

제출자 : 서울특별시장

1. 제안이유

가. 서울시에서는 디자인을 통해 시민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디자인 문화 확산 및 디자인 산업진흥을 위한 각종 사업의 수행을 위해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의 운영을 지원하고 있음

나. 이에 2021회계연도 서울특별시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서울디자인재단 출연 사무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 3항에 따라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사업개요

1) 사무명 : 서울디자인재단 출연금

2) 추진근거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서울특별시 재단법인 서울디자인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3) 필요성 : 서울시민의 삶의 질 향상 및 디자인 문화확산 및 디자인산업 진흥

4) 사무내용

- 동대문디자인플라자 및 동대문역사문화공원의 운영
- 서울디자인지원센터의 운영
- 디자인정책 연구사업과 디자인 관계 자료의 수집·관리, 조사 연구 및 전시·보급
- 디자인 진흥 및 작품 전시활동과 그 보급
- 디자인의 국·내외 교류사업
- 디자인 진흥을 위하여 서울특별시장이 위탁하는 사업

나. 서울디자인재단 기관 개요

- 1) 소재지 : 서울시 종로구 율곡로 283
- 2) 규모 : 대지 3,191㎡, 건물 5,937㎡(9층 건물)
- 3) 전경 및 위치도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및 사전절차

- 지방재정법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자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에 근거가 있는 경우와 제17조 제2항의 공공기관에 대하여 조례에 근거가 있는 경우에만 출연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나. 예산조치 : 2021년도 세출예산 편성

다. 합 의 : 해당사항 없음

※ 작성자 : 디자인정책과 디자인정책팀 서점덕 (☎ 2133-2703)